

광명시 방화 규정

제정	1981. 7. 1	훈령 제 25호
개정	1998. 10. 2	훈령 제179호(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)
	1999. 8. 19	훈령 제197호
	2008. 6. 16	훈령 제273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)
	2010. 12. 15	훈령 제297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일부개정	2016. 9. 26	훈령 제373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청의 건물 공작물 시설 및 물품 등 재산에 대한 화재
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임) 방화 전반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.

제3조(방화책임자의 책임) 시장은 본청에 방화책임자 1인을 임명하여야 하되
방화 책임자는 회계과장으로 하며 방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을
진다. <개정 98. 10. 2, 99. 8. 19>

1. 방화 계획 수립 훈련실시 및 감독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.
2. 검열 및 순찰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 감독
3. 방화 시설의 설비관리 및 정비의 실시

제4조(화기단속 책임자의 책임) 시장은 실·과·사업소에 정부 각1인의 화기단
속 책임자를 임명하되 기준은 실·과·사업소의 서무담당과 기타 1인으로 하
며 화기단속 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. <개정 98. 10. 2,
2010. 12. 15>

1. 실내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
2. 실내 책임구역 내의 화기에 대한 교육
3. 방화시설의 정비 및 기구의 비치와 관리유지
4. 일과 후 화기단속 상황을 확인하고 당직자에게 인계

제5조(당직자의 책임) 당직자는 일과 후 단속사항에 대하여 화기단속 책임자와
같은 책임을 지며 일과 중 옥외 화기 단속책임을 진다.

제6조(신호) 화기경보는 다음 신호로써 한다.

1. 타종

경계신호 1타 후 연타를 반복

발화신호 난타

2. 싸이렌

경계신호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호명

발화신호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5회 호명

제7조(화재통보 및 신호)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자가 소방서에 연락하는
동시 화기단속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화기단속 책임자는 화기경보 신
호를 내려야 한다.

제8조(방화대 편성) 시장은 자체방화대를 편성하고 그 대장을 임명한다. 다만,
대장은 방화 책임자로 한다.

제9조(구성) 방화대에 대장 부대장 각 1인을 두며 그 밑에 지휘반 소화반 및
대피반을 둔다.

제10조(방화대의 임무) 방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방화 대장은 방화대를 편성 지휘 운용한다.
2. 부대장은 방화대장을 보좌하고 대장 부재 시 그를 대리한다.
3. 지휘반은 방화임무의 전반적 지휘, 각 반의 임무의 조정, 각 반과의 연락
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여 지휘조와 연락조를 둔다.
4. 소화반은 화재 시 소화에 필요한 급수 소방장 부분의 파괴 및 소화작업
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여 급수조 파괴조 및 소화조를 둔다.
5. 대피반은 화재 시 물품의 반출, 우선순위 결정, 반출 안전지대의 선정, 반
출작업 위험구역 내의 인원방출 및 응급치료와 후송물품의 감시 및 도난
방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반출조 및 구호조 감시조를 둔다.

제11조(정기 교육) 년 4회 정기적으로 방화교육을 실시한다.

제12조(방화연습 및 시범) 동절 초기(10월) 중에 전직원을 방화연습 실시하여
야 하며 필요에 따라 소방서에 의뢰하여 방화시범을 실시한다.

제13조(훈련 과정) 방화교육 및 훈련에는 최소한 경보신호 연락소화파괴 대피
구호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.

제14조(소화 시설) 청내 소화작업에 필요한 곳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

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6. 9. 26>

제15조(피난 시설) 청내 필요한 장소에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6. 9. 26>

제16조(설비관리유지) 시장은 전2조의 설비를 적절히 관리 유지하고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자 2인을 선정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

제17조(인화물질취급)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위험한 물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18조(정기 검열) 시장은 정기적으로 소방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년1회 이상 옥내외의 전기 공작물의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(수시 검열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방서장에게 요청하여 소방검열을 받을 수 있다.

제20조(보칙) 이 규정시행의 필요한 세부 사항은 회계과에서 문서로서 하달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2 훈령 제179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8. 19 훈령 제197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훈령 제273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15 훈령 제297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부터 ㉓ 까지 생략

㉔ 광명시 방화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실·과”로 한다.

광명시 방화 규정

㉕ 부터 ㉗ 까지 생략

부칙 <2016. 9. 26 훈령 제373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
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